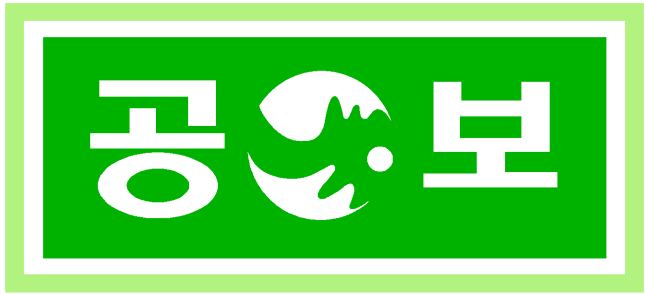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	기 관 의 장



제 870 호 2014. 2. 6(목)

## 훈 령

○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199호[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] ..... 2

회 관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기획홍보실(☎241-7124 행정7124)

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 
이에 발령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유종오



2014년 2월 6일

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199호

**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**

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구분·직종·직급·정원·직렬 중 기획홍보실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별표 1】

## 복구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표(제2조제1항 관련)

구 분	직 종	직 급	정 원	직 렬
기 획 홍 보 실	계		24	
	일반직	소계	24	
		5급	1	행정1
		6급	5	행정5
		7급	10	행정7, 행정·시설1, 시설1, 행정(임기제)1
		8급	7	행정4, 행정(임기제)1, 행정·보건1, 전산1
		9급	1	행정1